

보도일시

2018. 11. 8. (목) 12: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생산 부서: 개인납세국 소득세과

담당 과 장 이응봉 과 장 044) 204-3241

배포 일자: 2018년 11월 8일

담당 자 김일환 사무관 044) 204-3252

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.

-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적극 연장 -

□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 명에게 납세 고지서를 보내어, 11. 30.(금)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.

○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, 이자·배당·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,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됨.

□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2달 후 분납할 수 있음.

-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: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
-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: 세액의 50%이하의 금액

○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'19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를 별도로 보내니, '19. 1. 31.(목)까지 납부하면 됨.

□ 한편, 자연재해, 자금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니, 대상자는 11.27(화)까지 신청하여야 함.

○ 특히, 집중호우·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4천 명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간('19. 2. 28.까지) 연장함.

* 특별재난지역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총 2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가능함.

1.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방법 안내

□ 중간예납 대상자

-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 명(전년 130만 명)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어, 11.30.(금)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.
-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로 '17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 하여야 함.

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	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
이자·배당·부동산임대·사업·근로·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	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

- 다만, 이자·배당·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,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됨.(☞ 붙임1)

$$\text{중간예납세액} = \text{중간예납기준액} \times 1/2 - \left[\text{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} \right]$$

$$* \text{중간예납 기준액} = \left[\begin{array}{l} \text{전년도 종합소득세액} + \text{확정신고 자산납부세액} + \text{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(가산세포함)} + \text{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산납부세액 (가산세포함)} \end{array} \right] - \text{환급세액}$$

□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

-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 금액을 '19.1.31.(목)까지 분납할 수 있음.

-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: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
-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: 세액의 50%이하의 금액

- 중간예납 분납 가능자에 대해서는 고지서와 함께 분납 안내문과 영수증서 서식을 함께 보내드렸음.

☞ 분납 대상자가 11.30.까지 납부할 세액 및 분납할 세액 예시

- (고지세액 15,470,000원인 경우) 10,000,000원만 11.30.까지 납부, 5,470,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'19. 1. 31.(목)까지 납부
- (고지세액 20,000,000원인 경우) 10,000,000원만 11.30.까지 납부, 10,000,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'19. 1. 31.(목)까지 납부
- (고지세액 35,450,000원인 경우) 17,725,000원만 11.30.까지 납부, 17,725,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'19. 1. 31.(목)까지 납부

□ 중간예납 납부 방법

- 고지 받은 중간예납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
 -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,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음.(☞ 붙임3)

▶ 홈택스 누리집 [신고/납부] → [세금납부] → [국세납부] → [납부할 세액 조회납부] → 과세구분이 '고지분'인 건을 선택 → '납부할세액' 전액을 '납부세액'에 입력 → [납부하기] 클릭하여 전자납부(공인인증서 인증 필요)

- 분납하는 경우에는
 - 동봉된 영수증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,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하면 됨.

▶ 홈택스 누리집 [신고/납부] → [세금납부] → [국세납부] → [납부할 세액 조회납부] → 과세구분이 '고지분'인 건을 선택 → '납부할세액'에서 '분납할세액'을 빼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만 '납부세액'에 입력 → [납부서 출력] 클릭·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[납부하기] 클릭하여 전자납부(공인인증서 인증 필요)

- 분납가능 대상자가 11.30.(금)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
 - 미납부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분납할 세액으로 처리한 후, '19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를 보내드리니
 - '19.1.31.(목)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하면 됨.

☞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 및 분납 고지서 발송 예시

- (고지세액 30,000,000원이나 11.30.까지 10,000,000원만 납부한 경우) 분납 가능액은 고지세액의 1/2인 15,000,000원이므로, 15,000,000원은 별도 발송되는 고지서로 '19. 1. 31.(목)까지 납부
 - 11.30.까지 15,000,000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10,000,000원 납부하였기 때문에 5,000,000원에 대하여 가산금 3% 부과(1개월 경과 시 마다 1.2% 가산금 추가 부과)

2.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 대상자 및 신고 방법

□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 대상자

-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('18.1.1.~ 6.30.)의 소득세액(이하 '중간예납추계액')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%에 미달하는 경우에는
 - 국세청에서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11.30.(금)까지 신고·납부할 수 있음.(☞ 붙임 4,5)
- 또한,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('18.1.1.~ 6.30.)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함.(☞ 붙임 4,5)

※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,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.

□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제출 및 자진 납부기간

- 신고·납부기간: 2018.11. 1.(목) ~ 11.30.(금)

□ 중간예납추계액 신고·납부 방법

-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 제출도 가능함.(☞ 붙임 2)
 - 전자신고 운영기간: 11.1. ~ 11.30. (매일 06:00 ~ 24:00)
 - 전자납부 운영기간: 11.1. ~ 11.30. (매일 00:30 ~ 23:30)
- * 신용카드 납부 포함, 일부은행은 07:00~23:30(☞ 붙임3)

3. 특별재난지역 및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세정지원 적극 실시

□ 특별재난지역 납세자,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 연장

- 국세청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*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4천 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함.
 - * (전남 보성) 보성읍·회천면('18.7.18.선포), (전남 완도) 보길면, (경남 함양) 함양읍·병곡면, (경기 연천) 신서면·중면·왕징면·장남면 ('18.9.17.선포), (경북 영덕) 영덕군, (경주시) 외동읍·양북면, (경남 거제) 일운면·남부면, (전남 고흥) 동일면, (전남 완도) 소안면·청산면 ('18.10.24.선포)
-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고지서 발송 이후 징수유예통지서를 별도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
 - 징수유예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월에 납부하지 않고 '19.2.28.(목)까지 납부하면 됨.(19.2월 초에 고지서를 다시 보내드립니다)

□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납세자는 최대 2년 동안 납부기한 연장

- 산업·고용위기지역*,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이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함.
 - * 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·고용위기지역) 군산, 거제, 목포, 통영, 경남 고성, 창원 진해구, 울산 동구, 전남 영암, 전남 해남군

□ **기타 경영애로 사업자는 최장 9개월 동안 납부기한 연장**

- 이 밖에 경기침체,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.
- 징수유예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, 관할 세무서에 11.27.(화)까지 우편(방문)신청 하여야 함.

※ 온라인 신청방법

- ① 홈택스 접속→ ② 신청·제출→ ③ 일반 세무서류 신청→ ④ ‘민원명 찾기’에서 ‘징수유예’ 검색→ ⑤ 인터넷 신청

- 붙임**
1.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
 2.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안내
 3.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안내
 4.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
 5.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부표 (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)
 6. 징수유예통지서

1. '18.1.1.현재 비사업자로서 2018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*(소법§65①)
 - *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고지제외
2. 다음에 해당하는 자(소득세 사무처리규정 §73)
 - 가. 중간예납기간 종료일('18.6.30.)이전에 휴·폐업한 경우(휴업자 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)와
 - 나.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
3.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(소령§123, 소칙§64)
 - 가. 이자소득·배당소득·근로소득·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
 - 나. 사업소득 중 속기·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 - 다.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(수시부과결정*)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
 - * 수시부과결정 :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
 - 라.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
 - (1) 저술가·화가·배우·가수·영화감독·연출가·촬영사 등 자영업술가
 - (2) 직업선수·코치·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
 - 마.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·증권매매의 권유·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·권장수당·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
 - 바.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(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 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)
 - 사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
 - 아.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「주택법」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
4.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(소법§68)
5. 중간예납기간 중(2018.1.1.~6.30.)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·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(소법§65⑩)
6.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(소법§86)

1. 중간예납 전자신고

○ 중간예납 전자신고 절차

구 분	설 명
① 홈페이지 접속	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.
② 사용자 로그인	홈택스 가입자는 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ID,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.
③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 실행	[신고/납부]→[세금신고]→[종합소득세] 메뉴를 선택한 후 「중간예납 작성」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.
④ 신고서 작성	신고사유를 선택 후 「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」 작성화면에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.
⑤ 신고서(납부서) 출력	작성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서식형태로 조회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. ※ 홈택스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[신고/납부]→[세금납부]→[국세납부] 메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.
⑥ 신고서 전송	작성한 신고서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전송합니다.
⑦ 접수증 확인	신고서가 정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.

○ 중간예납 전자신고 화면

1. 홈택스 로그인 후 '신고/납부' 클릭



2. 세금신고의 '종합소득세' 클릭



3. '중간예납 작성' 클릭



4. 주민등록번호 '조회' 클릭 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사유 선택

▶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본정보 및 소득종류

● 기본사항

새로작성하기 신고서 불러오기

개인 단체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개인 <input type="radio"/> 단체(종중)		개인 또는 단체(종중) 대하여 신고할 경우에 선택합니다.			
주민등록번호	610807 - ●●●●	조회	성명	강***	귀속년도	2018
주소	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 33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1066 텐즈힐 108동 1001호					
주소지 전화	[] - [] - []		휴대전화	010 [] - 1111 - 1111		
사업자등록번호	없음 [] - [] - []	조회	상호			
사업장 소재지						
사업장 전화	[] - [] - []	전자메일	[] @ []	직접입력	[]	

● 신고사유

중간예납 추 계액 신고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신고사유 1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(1.1~6.30.)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
도움말	<input type="radio"/> 신고사유 2 중간예납 추계액이 종합예납 기준액의 30/100에 미달하는 경우

5.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작성

▶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

●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

소득구분	총수입금액	필요경비	배당가산액	소득금액
이자소득	[0]			0
배당소득	[0]		[0]	0
부동산임대업(주택임대 업제외)의 사업소득	[0]	[0]		0
부동산임대업(주택임대 업제외)외의 사업소득	[0]	[0]		0
근로소득	[0]	0		0
연금소득	[0]	0		0
기타소득	[0]	[0]		0
합계	0	0	0	0

●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

소득구분	소득별 소득금액	부동산임대업(주택임대업제 외)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	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
이자소득	0	[0]	0
배당소득	0	[0]	0
부동산임대업(주택임대업제 외)의 사업소득	0	[0]	0
부동산임대업(주택임대업제 외)외의 사업소득	0		0
근로소득	0	[0]	0
연금소득	0	[0]	0
기타소득	0	[0]	0
합계	0	0	0

이전

저장 후 다음이동

6.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서 작성

중간예납 추계액신고서

중간예납세액 계산

7.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	0
8.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납부세액	0
9. 추가납부세액	0
10. 중간예납기준액(7+8+9)	0

중간예납세액 계산

11. 중간예납기간(1월~6월)의 종합소득금액	0
12. 종합소득금액 연간환산액(11*2)	0
13. 이월결손금	0
14. 종합소득공제	0
15. 종합소득 과세표준(12-13-14)	0
세율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도움말 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소득이 있거나 주택매매업자의 경우 체크합니다.	6.00 %
16. 산출세액	0
17. 중간예납 산출세액(16.산출세액/2)	0
18. 감면세액	0
19. 세액 공제액	0
20.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	0
21. 수시부과세액	0
22. 원천징수세액	0
23.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계(18+19+20+21+22)	0
24. 계(17-23)	0
25. 분납할세액(2개월 이내)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도움말	0
26.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	0

※ 중간예납 시 (24) 계(17-23) 납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으며 납부서도 출력되지 않습니다.

구분	주요 내용				
<p>전자납부 (PC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세청 홈택스 납부(공인인증서 로그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‘신고/납부’→‘세금납부’→‘납부할세액 조회납부’→‘고지분’ 선택 - 중간예납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‘신고/납부’→‘세금납부’→‘납부할세액 조회납부’ ○ 이용 시간(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 text-align: center;">00:30~23:30</td> <td>농협은행, 신한, SC제일, 기업, KEB하나, 한국씨티, 수협, 대구, 부산, 광주, 제주, 전북, 경남, 농축협, 새마을, 산림조합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7:00~23:30</td> <td>산업, 우리, 국민, 우체국, 상호저축, 신한</td> </tr> </table> 	00:30~23:30	농협은행, 신한, SC제일, 기업, KEB하나, 한국씨티, 수협, 대구, 부산, 광주, 제주, 전북, 경남, 농축협, 새마을, 산림조합	07:00~23:30	산업, 우리, 국민, 우체국, 상호저축, 신한
00:30~23:30	농협은행, 신한, SC제일, 기업, KEB하나, 한국씨티, 수협, 대구, 부산, 광주, 제주, 전북, 경남, 농축협, 새마을, 산림조합				
07:00~23:30	산업, 우리, 국민, 우체국, 상호저축, 신한				
<p>신용카드 납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접근 방법: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(www.cardrotax.kr) ○ 카드납부 시간: 00:30~23:30(연중 무휴) ○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(납세자정보, 세목, 납부 금액 등)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○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*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. * 납부세액의 0.8%(체크카드는 0.5%) ○ 세무서 방문 납부의 경우 09:00~18:00 중에만 이용가능 				
<p>모바일 납부 (스마트폰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세청 ‘홈택스 앱’ 납부(공인인증서 로그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‘신고/납부’→‘국세납부’→‘납부할세액 조회납부’→‘고지분’ 선택 - 중간예납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‘신고/납부’→‘세금납부’→‘납부할세액 조회납부’ ○ 이용 시간(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 text-align: center;">00:30~23:30</td> <td>농협은행, 신한, SC제일, 기업, KEB하나, 한국씨티, 수협, 대구, 부산, 광주, 제주, 전북, 경남, 농축협, 새마을, 산림조합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7:00~23:30</td> <td>산업, 우리, 국민, 우체국, 상호저축, 신한</td> </tr> </table> 	00:30~23:30	농협은행, 신한, SC제일, 기업, KEB하나, 한국씨티, 수협, 대구, 부산, 광주, 제주, 전북, 경남, 농축협, 새마을, 산림조합	07:00~23:30	산업, 우리, 국민, 우체국, 상호저축, 신한
00:30~23:30	농협은행, 신한, SC제일, 기업, KEB하나, 한국씨티, 수협, 대구, 부산, 광주, 제주, 전북, 경남, 농축협, 새마을, 산림조합				
07:00~23:30	산업, 우리, 국민, 우체국, 상호저축, 신한				
<p>금융기관 · 우체국 직접납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용 시간: '18년 11월 30일(금)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- 중간예납고지서(분납 시에는 직접 작성한 영수증서)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·납부 ○ 금융기관 방문 없이 중간예납고지서에 안내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도 가능 				

붙임 5

중간에납추계액 신고서 부표 (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)

중간에납기간(1~6월)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

①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

소득구분		총수입금액	필요경비	배당가산액	소득금액
이자소득					
배당소득					
사업 소득	부동산임대업				①
	부동산임대업 외				
근로소득					
연금소득					
기타소득					
합 계					

②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

구 분		소득별 소득금액	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	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
이자소득				
배당소득				
사업 소득	부동산임대업	②		
	부동산임대업 외			③
근로소득				
연금소득				
기타소득				
합 계				

※ 작성요령

1. ①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: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.
2. 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: ①란의 금액이 결손(-)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.
3. ③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란: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.

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[별지 제15호서식] <개정 2012.2.28>

행정기관명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[] 징수유예 (승인 여부) 통지
[] 체납처분유예

귀하(귀사)의 [()국세·체납액의 징수유예, ()체납처분유예]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(근거: [] 「국세징수법」 제15조제3항·제4항, 제17조제3항·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, [] 「국세징수법」 제8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).

인 적 사 항	성 명 (상 호)			생 년 월 일 (사업자등록번호)		
	주 소 (사업장)					
신 청 일			승 인 여부			
유예 승인(기각) 사유						
징수유예(체납처분유예)하는 국세·체납액의 내용						(단위 : 원)
세 목 코드	발행번호	납부기한	연도·기분	내국세	농어촌특별세	
세 목			계	교육세	가 산 금	
징수유예(체납처분유예) 기간			년 월 일 ~ 년 월 일			
분 납 금 액 및 횟 수 (단위: 원)						
횟 수	세목코드	발행번호	납부기한	연도·기분	내국세	농어촌특별세
	세 목			계	교육세	가 산 금
계						

끝.

발 신 명 의

직인

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(전화:)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 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) 전송() 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